

# 십 참여 안내문

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사업문의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(www.suwon.go.kr/recruit)

신청개요

#### 신청대상

- 참여업체: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~1000인 미만인 기업
- ※ 상시 근로자수는 최초 인턴지원 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- 참 여 자 : 새일 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

## 신청서류

- -기업체: ① 구인신청서, ② 사업자등록증, ③ 채용 담당자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,
  - ④ 인턴제재부가금 관련 확인서[별표 제 39호 서식], ⑤ 4대 보험 가입 명부,
  - ⑥ 통장사본. ⑦ 인턴약정서(인턴 선정 후 작성)
- -참여자: ① 구직신청서, ② 여성인턴제 참가신청서[별표 제 37호 서식],
  - ③ 인턴 선발에 따른 확인서[별표 제 37-1호 서식], ④ 통장사본
  - ※ 지방자치단체.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

신청방법: 방문 또는 전화상담(☎231-7958,7959) 후 팩스(☞231-1595)로 신청가능

#### 지원내용

- 1인 총액 380만원(기업 320만원, 인턴자 60만원)
- 인턴 기간(3개월) : (인턴채용지원금)매달 80만원씩 240만원 지급
- 인턴 종료(6개월 후) : (새일고용장려금)고용 유지한 경우 80만원 지급(기업)

(근속장려금) 60만원 지급(인턴자)

# 근무조건

- ① 전일제 근무(주당35시간 이상)
  - 월 환산 183시간/ 월 환산 월급 1,804,380원 이상 4대보험가입 필수
- ② 결혼이민여성(주 30시간 이상)
  - 월 환산 157시간/ 월 환산 월급 1,548,020원 이상 4대보험가입 필수

### 추진절차

- ▶ 수요 기업체, 인턴 대상자 발굴(구인 등록, 구직 등록, 서류 준비)
- ▶ 인턴 선정 및 알선 연계 ▶ 인턴 약정서 작성 ▶ 인턴근무
- ▶ 현장지도 점검 실시(인턴 근무기간 동안 1회 이상 실시)
- ▶ 사업 관리인턴 채용지원금 지급(기업)
- ▶ 고용유지장려금 지급(기업80만원, 개인60만원)
- ▶ 사후관리(인턴 종료 후 정규 채용 현황, 6 · 12개월 시점(2회) 고용 유지 현황 조사하여 고용유지율 점검)



# ■ 연계대상 기업

■ 4대 보험 가입 기업체(사업장)로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인 기업체

# 제외 대상 사업장

- ① **소비** · **향락업체\***, **근로자 파견업체\*\* 및 근로자 공급업체**(용역업체 등\*\*\*)
  - \*소비·향락업체:「청소년보호법」,「공중위생관리법」,「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」,「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이 정하는 업종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여업 등)
  - \*\*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
  - \*\*\*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(파견 근로자 포함)시키는 경우 포함
- ② 파견직 근로자(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
- ③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, 요양시설 요양보호사
  - 다만,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(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)
- ④ **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**(예, 학습지 교사, 방과후 교사)
  - \* 단, 시간제일자리의 경우, 4대보험가입, 정규직과 균등대우, 최저임금 110%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
- ⑤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숙박업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,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)
-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 ·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)
- ⑦ **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**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\*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
- ⑧ 인턴자의 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·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
- ⑨ 특정기간(감원방지기간) 내에 고용조정 이직(인위적감원) 사실이 있는 사업장
  - (최초 참여 기업) 당해 인턴연계(예정)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
  - (재참여 기업) 당해 인턴연계(예정)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
  - \* '최초' 및 '재'참여의 구분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기준함(특정 새일센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님)
  - \* 감원방지기간 계산 : 인턴연계일의 1개월 또는 3개월 전 동일 날짜의 다음날부터 인턴연계일까지(동일 날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인턴연계일까지)

(예시) 최초기업이 2.3일 연계시 감원방지기간은 1.4~2.3일, 3.30일 연계하는 경우 3.1~3.30일

- ⑩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⑪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- ⑩ 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